

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6. 24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6. 25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99. 7. 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이상문)

가. 제안이유

○ 자치단체 승격(군 → 시)

• 김포군 → 김포시로 승격(98. 4. 1)

○ 강화군 탈퇴

•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본 협의회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으로 동협의회 규약을 개정, 규약의 실효성 확보

나. 주요골자

○ 기존 구성 자치단체 일부 명칭변경

• 김포군 → 김포시

○ 인천광역시 강화군 삭제

○ 구성위원 조정

• 회장 1인과 위원 6명 → 회장 1인과 위원 5명

• 부시장, 부군수, 부구청장 대리위원 참석 → 부시장, 부구청장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

의안번호	제162호
의결년월일	99. 7. 8 (재71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6. 2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근 거

○ 지방자치법 제148조(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

개정이유

가. 자치단체 승격(군 → 시)

○ 경기도 안성시 등 2개 도·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법률 제5458호(97. 12. 17)

• 김포군 → 김포시로 승격(98. 4. 1)

나. 강화군 탈퇴

○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본 협의회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으로 동협의회 규약을 개정, 규약의 실효성을 확보

주요골자

가. 기존 구성자치단체 일부 명칭 변경[제3조(구성)]

○ 김포군 → 김포시

나. 인천광역시 강화군 삭제[제3조(구성)]

다. 구성위원 조정[제4조(조직)]

○ 회장 1인과 위원 6명 → 회장 1인과 위원 5명

○ 부시장, 부군수, 부구청장 대리위원 참석 → 부시장, 부구청장

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

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구성) 협의회의 구성은 부천시, 광명시, 시흥시, 김포시, 인천광역시의 부평구, 계양구로 한다.

제4조(조직)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되,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, 부구청장이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.

부 칙

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